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7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이훈기 · 이주희 · 박지원
김문수 · 허종식 · 박용갑
박 정 · 최민희 · 이광희
이정현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

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인터넷진흥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인터넷진흥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제3호 중 “제52조제3항제4호에”를 “제52조제4항제4호에”로 한다.

제76조제3항제13호 중 “제52조제6항을”을 “제52조제7항을”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인터넷진흥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최소한 1명의 이사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인터넷진흥원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u>⑤</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항</u>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2. <u>제4항</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